

## 韓國 在家老人 福祉政策의 改善에 관한 考察

사회복지과 한영현  
전임강사

### I. 序 言

한국사회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노인들의 사회참여기회를 제한하고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켜 왔으며, 이와 함께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와 가치체계의 변화는 노인들의 가족적, 사회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속에서 노인들은 고독과 소외, 빈곤이라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노인들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들의 문제는 개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따라서 노인문제에 대한 정책적, 사회복지적 차원의 관심이 최근들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노인복지정책은 사후적, 보완적, 개별적인 성격이 강하며 복지 프로그램의 수준도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재가노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事前的이고 統合的, 制度的인 노인복지 정책의 수립을 위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在家老人이란 시설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일반가정의 노인을 의미하며 이들의 생활상태는 다양하게 보여질 수 있다. 서구의 복지국가에서는 1970년대부터 노인복지정책을 시설복지위주에서 재가복지위주로 전환하여 탈시설화(deinstitutionalism)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재가노인 복지정책은 노인들의 친근한 이웃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나 친숙한 지역사회 환경속에서 생활하려는 욕구에 부응하여 이들을 가족이나 이웃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되도록 원조하고, 이들에게 정책적 원조를 통

하여 일정수준의 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단절적이고 비효율적인 시설에의 입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노인복지의 수준을 높이고 그 비용을 절감하게 한다.<sup>1)</sup> 뿐만아니라 노인인구의 증가나 노인단독세대의 증가에 따른 원조대상의 급증은 시설복지의 수용능력을 훨씬 상회하는 것일 수 있으며, 따라서 재가노인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와 지역사회의 노인보호기능을 강화하는 재가노인 정책은 노령화사회가 예견되는 한국에 있어서도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II. 老人問題 擡頭의 原因 및 背景

노인문제 대두의 원인이나 배경으로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노령인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현대화를 들 수 있다.

### 1. 老齡人口의 增加와 老齡人口의 社會人口學的 特性

노인인구의 절대적 수와 그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음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한국의 노령인구도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표2-1>에서 보여지듯이, 1960년대 이후 한국의 65세이상의 노령인구의 성장추이는 1960년에 82만에서 1980년에 146만으로 20년간 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기간중 전체 인구 증가율 53%보다 훨씬 높고,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의 20년간 104.1%증가할 것이며, 그 기간중 전체 인구증가율 25.9%의 4배 가까이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2000년에 있어서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300만 정도로 전체인구의 6.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60세이상의 노인인구는 1960년에서 1980년 사이에 64% 증가하였고 1980년에서 2000년사이에 111% 증가하여 2000년에는 전체인구의 10%인 478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E.Matilda Goldberg and Naomi Connly, " The Effectiveness of Social Care for the Elderly ", Biddles Ltd., Guildford, Surrey, PP.52-55, (1984)

<표2-1> 1960-2020년까지의 한국의 연령집단별 인구구성 및 증가율  
단위:1,000명, ( )속은 구성비 %

연령집단	(증가율: %)		(증가율: %)		(증가율: %)	
	1960	----->1980	----->2000	----->2020		
총 인 구	24,989(100.0)	--->38,124(100.0)	--->48,017(100.0)	----->52,473(100.0)	(52.6)	(25.9)
0 - 14	10,717(42.9)	--->12,951(34.0)	--->11,078(25.1)	----->9,258(17.6)	(20.8)	(-14.5)
15 - 59	12,889(51.6)	--->22,909(60.1)	--->32,159(65.2)	----->33,947(64.7)	(77.7)	(40.4)
15 - 64	13,450(53.8)	--->23,717(62.2)	--->33,969(68.8)	----->37,455(71.4)	(76.3)	(43.2)
60 <sup>+</sup>	1,383(5.5)	--->2,268(6.1)	--->4,780(10.0)	----->9,268(17.7)	(64.0)	(110.8)
65 <sup>+</sup>	822(3.3)	--->1,456(3.8)	--->2,972(6.2)	----->5,772(11.0)	(77.1)	(104.1)

자료 : 1. 경제기획원, 「1980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 1980.  
2. 경제기획원, 「추계인구: 1985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기초로 한 장기인구전망」, 1986.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절대수에 있어서의 증가는 노령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노인문제를 가진 노인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며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게 할 것이다. 노인인구 구성비의 증가는 <표2-2>에서 보는바와 같이 노인인구부양지수를 증가시키고 있어 생산인구의 사회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60세이상을 비생산노령인구로 보면 노인인구부양지수는 1970년에 10.3%에서 2000년에는 14.8%로 증가되어 생산인구의 사회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인인구수의 증가와 고령화는 성별 인구수의 불균형(性比차이), 혼인상태의 차이, 동거가족 형태의 다양화등과 결부되어 노인문제를 유발시키는 직,간접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데, <표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의 자료에 의할 때 한국의 노인 성비는 상당히 불균형적이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비는 줄어드는 현상이 보여진다. 이는 남자의 평균수명이 일반적으로 여자보다 5-6년 짧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독거노인의 정서적 문제와 보호문제, 또한 성문제 및 재혼문제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노인들의 성별 결혼상태의 차이도 위의 성비와 관련되어 심한 차이를 보여주는 데, 이것 또한 위에 언급한 여러가지 노인문제와 관련되어진다.2)

2) 張人協 外, 老人福祉學, 서울대학교 출판부, pp.7-17.(1990)

〈표2-2〉

노인인구의 증가추이

%

指 標	1970		1980		1985		1990		2000	
	60'	65'	60'	65'	60'	65'	60'	65'	60'	65'
노인 인구비	5.4	3.3	6.1	3.9	6.8	4.3	7.7	5.0	10.7	6.8
노인부양지수	10.3	6.1	10.1	6.2	10.8	6.6	11.1	7.2	14.8	9.4
노령화 지수	12.9	7.8	17.9	11.4	22.8	11.4	29.8	19.4	50.3	31.9

자료: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90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및 인구추계」, 1990.

〈표2-3〉

노령연령집단별 성비

전 체	65 - 69	70 - 74	75'
59.5	72.5	61.5	41.2

자료: 경제기획원, 「198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 1980.

한편, 최근에 들어와서 노인단독세대가족 및 2세대 노인가족 또는 2세대 노인핵가족(노인+미혼자녀)의 형태가 많이 보여지는 데, 노인단독세대가족의 증가는 노인의 가족내에서의 역할변화 및 재조정문제, 노인간호문제, 경제적 부양문제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2세대 노인핵가족에 있어서도 노인의 역할문제, 노인의 간호 및 보호문제등의 노인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노인가족의 증가는 가족원에 의해 제공될 수 없는 많은 사회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 2. 現代化와 老人問題

Cowgill은 현대화를 한 사회 전체가 생물적인 동력(animated power), 제한된 기술, 비교적 미분화된 제도,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전망과 가치관에 바탕을 둔 비교적 원적인 생활양식에서 무생물적 동력(inanimated power), 고도로 발달된 과학적 기술, 분화된 개인의 역할에 상응하는 고도로 분화된 제도, 효율성과 발전을 중시하고 거시적인 전망에 바탕을 둔 압도적으로 도시적인 생활양식으로 변천하는 것이라 보고 현대화 현상의 핵심적 요소로서 건강기술의 발전, 생산기술의 발전, 도시화, 교육의 대중화를 들고 있다. 그는 현대화의 이러한 핵심적인 네가지 요소가 어떻게 노인의 지위를 저하시키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건강기술의 발달은 인구의 고령화를 가져오고 고령인구는 세대간의 직업경쟁에서 실패하여 퇴직을 하게되고 이는 노인의 지위를 하락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제적 생산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직업의 등장은 직업기술과 지식의 측면에서 노인들에게 불리한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젊은층에게 의존하거나 퇴직하게 되는 데, 의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에 이르게되면 퇴직의 압력에 의해 불가피하게 퇴직을 할수 밖에 없게 된다. 또한

도시화는 자녀와 부모사이의 지리적 분화현상과 더불어 사회적 상호작용을 약화시켜 결국은 노인의 지위를 하락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며,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이동의 가능성은 자녀가 부모보다 지위가 높아지는 지위의 전치현상을 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노인들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교육의 대중화는 자녀와 부모사이의 교육적 격차를 만들어내며 교육의 격차는 사회적 지위를 전도시켜 결국은 노인의 지위를 낮게 만든다.<sup>3)</sup>

한편, 현대화의 핵심적인 네가지 요소는 인과관계의 연결고리를 통하여 전형적인 노인문제를 발생시킨다. 현대 우리사회의 노인문제를 대별하면, 긴 여가시간, 역할 상실, 수입절감, 건강의 약화, 부양 및 보호문제,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현대화의 핵심적인 네가지 요소에서 이러한 다양한 노인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인과관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 보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수명연장과 일률적인 정년제는 사회적 의미에서의 노인들을 양산하여 노령기를 장기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인 직업역할의 상실로 인하여 노인들은 이러한 여가시간을 보낼 적당한 방법을 찾기가 힘들어진다. 더불어 여가에 대한 사회화의 부족과 여가시설의 부족, 여가프로그램의 미개발은 노인들의 여가문제를 더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간다. 한편, 생산기술의 발전과 기계화는 취업 및 직업역할 수행의 경쟁에 있어 노인들의 입장을 약화시키고 이에 수반되는 퇴직제도는 노인들의 직업적 역할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게 만든다. 직업역할의 상실은 사회적 자아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수도 있다. 직업적 역할의 상실은 또한 정기적인 수입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노령연금제도의 급여가 전반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수입의 단절은 노인들의 경제사정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그들을 빈곤상태에 빠뜨릴수도 있으며, 자녀에게 생활을 의존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자녀에게 생활을 의존하는 경우에는 핵가족화, 가족수의 소수화, 여성의 취업등으로 인하여 노인부양의 문제가 자녀들의 가족생활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다.

노인들은 생물학적 또는 신체적 노화에 의하여 건강의 약화를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수입의 부족으로 인하여 노인들이 그들의 건강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호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노인질병은 고액진료가 많으며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개인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현재의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제도는 노인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데 이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 하겠다. 한편, 교육의 대중화는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게 하며, 교육수준의

3) D.O.Cowgill, " Aging and Modernization: A Revision of the Theory ", in Later Life, ed. by J.A. Gubrium, Springfield, PP.127-200, (1974)

차이는 세대간에 사회화의 차이를 유발하여 세대간에 갈등과 고립을 가져온다. 이러한 세대간의 고립과 갈등은 가정과 사회에서의 세대간의 고립과 소외를 낳게되며, 이로 인하여 부모와의 별거문제, 부모부양문제등에 대해 심각한 갈등을 나타내게 된다.

또한, 도시화는 사회적 이동과 지리적 이동을 유발하여 사회적 거리감과 공간적 고립 및 핵가족화의 추세를 촉진하며, 결국 사회와 노인,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가정 내의 부모와 자식사이의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라는 노인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sup>4)</sup>

### Ⅲ. 在家老人의 生活實態 및 福祉需要調查

본 조사의 대상은 노인수용시설에 수용된 노인들을 제외한 광주직할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노인 349명이며, 자료수집은 1992년 7월에 개별 가정방문과 노인정방문에 의한 면접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AS프로그램에 의한 전산처리과정을 거쳐 분석되었으며, 주로 사용한 통계방법은 빈도, 백분율, Crosstab, Chisq 등이다.

#### 1. 조사대상자의 特性 및 住居環境

조사대상자를 性別로 구분하면 남자가 165명(47.3%)이고 여자가 184명(52.7%)이다. 年齡은 60-64세가 13.8%, 65-69세가 19.2%, 70-74세가 26.1%, 75-79세가 18.3%, 그리고 80세이상인 22.6%이다. 조사대상자들의 학력은 <표3-1>에서 보여지듯이 대부분이 무학(54.4%)이거나 한학(서당)(9.2%) 또는 국민학교졸업이하(18.3%)이며, 고등학교졸업이상의 학력은 가진 사람은 전체의 6.6%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의 結婚狀態는 사별이 50.4%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부부가 동거하고 있는 비율도 48.1%나 되었다. 조사대상자중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전체의 21.5%였으며 불교를 믿는 사람은 19.8%이었다. 또한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유교를 믿는 사람도 9.2%나 보였다. 노인들의 조사에서는 다른 조사에 비해 불교나 유교를 믿는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住宅形態는 <표3-2>와 같이 한옥이 33.0%, 양옥이 27.6%, 그리고 아파트가 20.7%이었으며, 브룩크집이 12.1%이었다. 이들의 住宅所有形態는 자가(허가)가 70.1%로 가장 많았으며, 전세가 15.8%, 월세가 4.9%이었다. 한가족이 사용하는 방의 수는 대개가 3개이하이었으며, 4개이상의 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16.3%이었다.

4) 張仁協외, 前掲書, PP.25-31, (1990)

<표3-1> 조사대상자의 특성 명 (%)

구 분	내 용					
성 별	남 165 (47.3)			여 184 (52.7)		
연 령 별	60-64 세 48(13.8)	65-69 세 67(19.2)	70-74 세 91(26.1)	75-79세 64(18.3)	80세이상 79(22.6)	
학 령 별	무 학 190(54.4)	한학(서당) 32(9.2)	국졸이하 74(18.3)	중졸이하 30(8.6)		
	고졸이하 13(3.7)	대졸이하 9(2.6)	대학원이상 1(0.3)			
결 혼 상 태	동거 (기혼) 168(48.1)	별 거 3(0.9)	사 별 176(50.4)	기타 2(0.6)		
종 교	기독교 75(21.5)	천주교 35(10.0)	불 교 69(19.8)	유 교 32(9.2)	민족종교 1(0.3)	기타 1(0.3)
	종교없음 136(39.0)					

그러나 1개의 방에서 전체가족이 생활하는 경우도 13.5%나 되었다. 또한 동거가 구수는 1주택 1가구의 형태가 48.4%이었고, 4가구 이상이 한집에 모여사는 경우는 전체의 15.1%이었다.

<표3-2> 조사대상자의 주거환경 %

구 분	내 용							
주택형태	양 옥 27.6	한 옥 33.0	(영구임대)아파트 20.7			연립주택 4.9	N 348 (100.0)	
	판자집 1.1	블록집 12.1	흙 집 0.6					
주택소유형태	자가(허가) 70.1		자가(무허가) 3.2		전 세 15.8	월 세 4.9	N 348 (100.0)	
	영구임대(아파트) 4.9			이웃집(무로거주) 1.1				
사 용 방 수	1개 13.5	2개 30.7	3개 39.5	4개 12.0	5개 3.4	6개 0.6	7개이상 0.3	N 348(100.0)
동거가구수	1가구 48.4	2가구 17.8	3가구 18.6	4가구 7.4	5가구 3.4	6가구 4.3	N 349(100.0)	

## 2. 조사대상자의 家族 및 經濟生活

조사대상자의 同居形態를 살펴본 것이 <표3-3>이다. 표와 같이 이들은 결혼한 아들내외와 동거하는 비율이 44.4%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내외만 생활하는 경우는 22.6%, 그리고 미혼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14.3%이었다. 또한 노인 단독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10.9%나 되었다. 여기에서 노인내외나 혹은 노인이 단독으로 생활하는 경우에 가사나 소득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어진다. 한편, 노인들의 동거가족수는 대개가 4명이하였으며, 노인들은 혼자 또는 부부끼리 같은방을 쓰거나 손자들과 같은방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lt;표3-3&gt; 조사대상자의 동거형태 %

구 분	내 용								N 349 (100.0)
	결혼한 아들내외 44.4				결혼한 딸내외 2.6		노인내외 22.6		
동거가족형태	미혼자녀 14.3			자식이외의 친척 5.2			독신 10.9		
동거 가족수	1명 11.2	2명 25.8	3명 12.0	4명 12.6	5명 14.6	6명 12.3	7명 6.3	8명이상 5.2	N 348(100.0)
방을 함께 쓰는 사람	혼자 34.5	부부 44.8	손자들과 17.8		자식들과 2.0		온가족 0.9		N 348(100.0)

조사대상자들의 생활보호여부를 알아본 것이 <표3-4>이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들의 88.8%는 生活保護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며, 3.7%가 居宅保護를, 0.9%가 自活保護를 그리고 6.6%가 醫療扶助의 혜택을 받고 있다.

&lt;표3-4&gt; 생활보호 혜택의 종류 %

구 분 \ 내 용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	혜택없음	N
Total	N %	13 3.7	3 0.9	23 6.6	309 88.8	348 100.0
성별	남	1.82	1.21	6.06	90.91	165(100.0)
	여	5.46	0.55	7.10	86.89	183(100.0)
연령	60 - 64	4.17	4.17	8.33	83.33	48(100.0)
	65 - 69	0.00	0.00	6.06	93.94	66(100.0)
	70 - 74	3.30	0.00	7.69	89.01	91(100.0)
	75 - 79	6.25	1.56	3.12	89.06	64(100.0)
	80세 이상	5.06	0.00	7.59	87.34	79(100.0)
경제상태*	독립	1.19	1.79	6.55	90.48	168(100.0)
	거거	0.00	0.00	0.00	100.0	3(100.0)
	별사	5.71	0.00	6.86	87.43	175(100.0)
	타	50.00	0.00	0.00	50.00	2(100.0)

\* P&lt;0.05



이들 가족의 月平均 收入은 <표3-5>와 같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가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101만원이상의 수입을 갖는 가족은 전체의 5.4%이었다.

<표3-5> 월평균 수입 %

구 분 \ 내 용		없 다	30만이하	50만이하	80만이하	100만이하	101만이상	N
Total	N %	9 2.6	135 38.9	93 26.9	42 12.1	49 14.1	19 5.4	347 100.0
성별	남	2.45	39.26	27.00	10.43	14.11	6.74	163(100.0)
	여	2.72	38.58	26.63	13.59	14.13	4.34	184(100.0)
연령별	60 - 64	0.00	29.79	38.29	6.38	19.15	6.39	47(100.0)
	65 - 69	2.99	40.30	25.37	14.93	10.45	5.97	67(100.0)
	70 - 74	3.30	46.16	27.47	9.89	12.09	1.10	91(100.0)
	75 - 79	6.25	40.63	14.06	14.06	18.75	6.25	64(100.0)
	80세 이상	0.00	33.33	30.77	14.10	12.82	8.97	78(100.0)
결혼상태**	동거	3.61	45.27	27.71	8.43	10.24	4.22	166(100.0)
	거거	0.00	0.00	33.33	66.67	0.00	0.00	3(100.0)
	사별	1.14	32.95	26.14	14.77	18.18	6.82	176(100.0)
	기타	50.00	50.00	0.00	0.00	0.00	0.00	2(100.0)

\*\*\* P < 0.005

이러한 수입의 主所得源은 <표3-6>에서와 같이 아들인 경우가 64.5%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11.5%이었고 외부의 도움은 3.4%이었다. 본인의 수입이 주소득원인 경우는 연령이 낮을수록 많이 보여졌다. 한편, 노인들의 경제적인 주수입원은 <표3-7>에서 보여지는 데, 70.8%가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었으며, 13.8%가 본인의 직접수입이었다. 외부의 도움이 노인의 경제적인 주수입원인 경우는 3.7%이었다. 자녀들의 용돈이 노인들의 경제적인 주수입원인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부가 사별한 경우에 많이 보여졌다. 노인들의 용돈에 관한 것을 알아본 것이 <표3-8>과 <표3-9>인데, 노인들의 한달 용돈은 대개가 10만원이하였으며 10만원을 넘는 경우는 전체의 11.2%에 불과하였다. 또한 1만원 미만의 용돈으로 한달을 생활하는 경우도 전체의 13.5%나 되었다. 한편, 노인들의 용돈사용처를 살펴보면, 노인들은 주로 술,담배를 사거나(21.5%) 건강을 위해서(15.8%) 그리고 친목비나 부조금(12.0%)으로 용돈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여러가지 잡비에 많은 용돈(27.5%)을 쓰고 있었다.

<표3-6>

주 소득원

\*

구분 \ 내용		본인	배우자	아들	딸	며느리
Total	N %	40 11.5	14 4.0	225 64.5	17 4.9	6 1.7
성별 * 남	여	15.76 7.61	2.42 5.43	64.85 64.13	3.64 5.98	0.61 2.72
연령 * 남	60 - 64	22.92	6.25	47.92	2.08	2.08
	65 - 69	19.40	8.96	61.19	2.99	1.49
	70 - 74	10.99	4.40	68.13	5.49	0.00
	75 - 79	7.81	1.56	64.06	6.25	4.69
	80세 이상	1.27	0.00	73.42	6.33	1.27
직업 * 농림수산업 제조업	농림수산업	16.07	8.33	58.33	1.79	1.79
	제조업	33.33	0.00	66.67	0.00	0.00
	서비스업	6.82	0.00	70.45	7.95	1.70
	기타	0.00	0.00	50.00	0.00	0.00

  

구분 \ 내용		손자	자산, 이자소득	외부의 도움	기타	N
Total	N %	10 2.9	20 5.7	12 3.4	5 1.4	349 100.0
성별 * 남	여	1.82 3.80	7.88 3.80	1.82 4.89	1.21 1.63	165(100.0) 184(100.0)
연령 * 남	60 - 64	2.08	10.42	4.17	2.08	48(100.0)
	65 - 69	0.00	5.97	0.00	0.00	67(100.0)
	70 - 74	0.00	6.59	4.40	0.00	91(100.0)
	75 - 79	3.12	6.25	3.12	3.12	64(100.0)
	80세 이상	8.86	1.27	5.06	2.53	79(100.0)
직업 * 농림수산업 제조업	농림수산업	1.19	10.71	1.19	0.60	168(100.0)
	제조업	0.00	0.00	0.00	0.00	3(100.0)
	서비스업	4.55	1.14	5.11	2.27	176(100.0)
	기타	0.00	0.00	50.00	0.00	2(100.0)

\* P<0.05    \*\*\* P<0.005

<표3-7>

노인의 경제적인 주수입원

\*

구분 \ 내용		본인의 수입	자녀의 용돈	부동산, 이자	외부 도움	기타	수입 없음	N
Total	N %	48 13.8	247 70.8	23 6.6	13 3.7	5 1.4	13 3.7	349 100.0
성별 ** 남	여	20.61 7.61	66.06 75.00	7.27 5.98	1.82 5.43	1.21 1.63	3.03 4.35	165(100.0) 184(100.0)
연령 * 남	60 - 64	25.00	54.17	12.50	2.08	6.25	0.00	48(100.0)
	65 - 69	25.37	61.19	7.46	0.00	2.99	2.99	67(100.0)
	70 - 74	10.99	70.33	8.79	3.30	0.00	6.59	91(100.0)
	75 - 79	10.94	75.00	4.69	9.38	0.00	0.00	64(100.0)
	80세 이상	2.53	86.08	1.27	3.08	0.00	6.33	79(100.0)
직업 * 농림수산업 제조업	농림수산업	21.43	61.31	11.90	1.79	2.38	1.19	168(100.0)
	제조업	33.33	0.00	0.00	0.00	0.00	0.00	3(100.0)
	서비스업	6.25	81.25	1.70	5.11	0.57	5.11	176(100.0)
	기타	0.00	50.00	0.00	50.00	0.00	0.00	2(100.0)

\*\* P<0.01    \*\*\* P<0.005

<표3-8>

한달용돈의 액수

\*

구분 \ 내용		1만원미만	1-4만원	5-10만원	11-20만원	21만원이상	N
Total	N %	47 13.5	153 43.8	110 31.5	29 8.3	10 2.9	349 100.0
성별***	남 여	9.09 17.39	40.00 47.28	32.12 30.98	15.15 2.18	3.64 2.17	165(100.0) 184(100.0)
연령**	60 - 64	4.17	35.42	39.59	14.59	6.25	48(100.0)
	65 - 69	10.45	38.81	32.84	8.95	8.96	67(100.0)
	70 - 74	16.48	41.76	32.96	7.70	1.10	91(100.0)
	75 - 79	12.50	50.00	28.12	9.37	0.00	64(100.0)
	80세 이상	18.99	50.63	26.58	3.80	0.00	79(100.0)
거주형태***	동거	7.74	39.29	33.93	13.69	5.36	168(100.0)
	별거	100.00	0.00	0.00	0.00	0.00	3(100.0)
	사기 타	17.05 50.00	49.43 0.00	29.54 50.00	3.41 0.00	0.57 0.00	176(100.0) 2(100.0)

\*\* P<0.01 \*\*\* P<0.005

<표3-9> 용돈의 주된 사용처

- 1) 건강부분(병원비, 약값)
- 2) 음식비나 의복비
- 3) 여행이나 친구만나는데
- 4) 술, 담배를 구입하는데
- 5) 손자들 용돈주는데
- 6) 친목비나 부조금내는데
- 7) 잡비로 사용
- 8) 기타

\*

구분 \ 내용		1	2	3	4	5	6	7	8	N
Total	N %	55 15.8	23 6.6	13 3.7	75 21.5	23 6.6	42 12.0	96 27.5	22 6.3	349 100.0
성별***	남 여	13.33 17.93	1.82 10.87	4.85 2.72	39.39 5.43	3.64 9.24	13.94 10.33	18.18 35.87	4.85 7.61	165(100.0) 184(100.0)
연령**	60 - 64	18.75	10.42	4.17	27.08	4.17	8.33	27.08	0.00	48(100.0)
	65 - 69	14.93	13.43	5.97	16.42	4.48	16.42	19.40	8.96	67(100.0)
	70 - 74	10.99	3.30	4.40	14.29	8.79	17.58	32.97	7.69	91(100.0)
	75 - 79	23.44	1.56	4.69	25.00	4.69	12.50	23.44	4.69	64(100.0)
	80세 이상	13.92	6.33	0.00	27.85	8.86	3.80	31.65	7.59	79(100.0)
거주형태***	동거	17.26	4.76	4.17	29.17	5.95	14.29	19.64	4.76	168(100.0)
	별거	33.33	0.00	0.00	0.00	0.00	0.00	0.00	66.67	3(100.0)
	사기 타	14.20 0.00	8.25 0.00	3.41 0.00	14.20 50.00	7.39 0.00	10.23 0.00	35.80 0.00	6.25 50.00	176(100.0) 2(100.0)

\* P<0.05 \*\*\* P<0.005

### 3. 조사대상자의 健康 및 醫療問題

조사대상 노인들의 健康狀態는 <표3-10>과 같이 건강한 편인 사람이 33.5%,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55.3%로 나타났다.

<표3-10>

본인의 건강상태

\*

구분 \ 내용		매우 건강	건강한 편	보통	약간 나쁨	매우나쁨	N
Total	N %	31 8.9	86 24.6	39 11.2	139 39.8	54 15.5	349 100.0
성별***	남 여	12.12 5.98	32.73 17.39	10.91 11.41	32.12 46.74	12.12 18.48	165(100.0) 184(100.0)
연령	60 - 64 65 - 69 70 - 74 75 - 79 80세 이상	12.50 13.43 8.79 7.81 3.80	29.17 20.90 31.87 23.44 17.72	8.33 17.91 9.89 9.38 10.13	41.67 35.82 37.86 39.06 45.57	8.33 11.94 12.09 20.31 22.78	48(100.0) 67(100.0) 91(100.0) 64(100.0) 79(100.0)
결혼상태	동거 별거 사기 기타	10.12 0.00 7.95 0.00	30.95 0.00 19.32 0.00	9.52 33.33 12.50 0.00	39.29 66.67 40.34 0.00	10.12 0.00 19.89 100.0	168(100.0) 3(100.0) 176(100.0) 2(100.0)

\* P<0.05 \*\*\* P<0.005

<표3-11>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종류

- 1)신체장애 2)위장병 3)신경통 4)고혈압, 저혈압 5)천식, 기관지질병  
 6)피부질환 7)당뇨 8)빈혈 9)폐결핵 10)심장병  
 11)간질환 12)암 13)신경쇠약 14)황병 15)기타  
 16)병명미상 17)없다

\*

구분 \ 내용		1	2	3	4	5	6	7	8	9
Total	N %	29 8.3	18 5.2	113 32.4	31 8.9	27 7.7	3 0.9	9 2.6	1 0.3	2 0.6
성별***	남 여	9.70 7.07	6.67 3.80	21.82 41.85	7.88 9.78	9.09 6.52	0.61 1.09	1.82 3.26	0.00 0.54	1.21 0.00
연령	60 - 64 65 - 69 70 - 74 75 - 79 80세 이상	6.25 4.48 6.59 4.69 17.72	6.25 4.48 6.59 3.12 5.06	20.83 37.31 34.07 31.25 34.18	16.67 4.48 8.79 14.06 3.80	6.25 11.94 7.69 7.81 5.06	2.08 0.00 1.10 0.00 1.27	4.17 1.49 3.30 3.12 1.27	0.00 1.49 0.00 0.00 0.00	2.08 0.00 1.10 0.00 0.00
결혼상태***	동거 별거 사기 기타	6.55 33.33 9.09 50.00	7.14 0.0 3.41 0.00	22.62 33.33 42.05 0.00	10.71 0.00 7.39 0.00	10.12 0.00 5.68 0.00	1.19 0.00 0.57 0.00	4.17 0.00 1.14 0.00	0.00 0.00 0.57 0.00	1.19 0.00 0.00 0.00
구분 \ 내용		10	11	12	13	14	15	16	17	N
Total	N %	4 1.1	1 0.3	2 0.6	8 2.3	2 0.6	13 3.7	1 0.3	85 24.4	349 100.0
성별***	남 여	0.61 1.63	0.61 0.00	1.21 0.00	4.85 0.00	0.00 1.09	3.64 3.80	0.61 0.00	29.70 19.57	165(100.0) 184(100.0)
연령	60 - 64 65 - 69 70 - 74 75 - 79 80세 이상	2.08 1.49 0.00 3.12 0.00	0.00 0.00 0.00 1.56 0.00	0.00 0.00 2.20 0.00 0.00	0.00 0.00 5.49 0.00 3.80	0.00 0.00 1.10 0.00 1.27	2.08 4.48 2.20 1.56 7.59	0.00 0.00 0.00 1.56 0.00	31.25 28.36 19.78 28.12 18.99	48(100.0) 67(100.0) 91(100.0) 64(100.0) 79(100.0)
결혼상태***	동거 별거 사기 기타	1.19 0.00 1.14 0.00	0.00 33.33 0.00 0.00	1.19 0.00 0.00 0.00	2.38 0.00 2.27 0.00	0.00 0.00 1.14 0.00	1.19 0.00 5.68 50.00	0.60 0.00 0.00 0.00	29.76 0.00 19.89 0.00	168(100.0) 3(100.0) 176(100.0) 2(100.0)

\*\*\* P<0.005

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남자는 44.24%가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여자는 65.22%가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疾病은 <표3-11>과 같이 신경통이 32.4%로 가장 많았으며, 고·저혈압이 8.9%, 신체장애(중풍)가 8.3%, 천식이나 기관지질병이 7.7%, 위장병이 5.2%이었다.

性別로 살펴보면, 신경통은 남자가 21.82%, 여자가 41.85%로 여자에게서 훨씬 많았으며, 위장병이나 신경쇠약은 남자에게서 많이 보여졌다. 또한 부부가 같이 동거하는 경우에는 사별이나 별거의 경우보다 건강상태가 좀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중 몸에 아무런 질병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의 24.4%이었다. 한편,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醫療機關은 개인병원이나 약국이었다. <표3-12>에서 보여지듯이 33.5%의 노인들이 개인병원을 그리고 27.2%의 노인들이 약국을 주로 이용하는 것이다.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치료를 거의 못하는 경우는 6.6%이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醫療支援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3-12>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

구 분 \ 내 용		종합병원	개인병원	보건소	한의원	약국	기타	치료 못함	건강 합	N
Total	N %	47 13.5	117 33.5	17 4.9	28 8.0	95 27.2	2 0.6	23 6.6	20 5.7	349 100.0
성별	남 여	18.79 8.70	31.52 35.35	5.45 4.35	7.27 8.70	24.24 29.89	0.61 0.54	5.45 7.61	6.67 4.89	165(100.0) 184(100.0)
연령	60 - 64	16.67	33.33	6.25	4.17	29.17	0.00	2.08	8.33	48(100.0)
	65 - 69	13.43	34.33	4.48	5.97	29.85	0.00	7.46	4.48	67(100.0)
	70 - 74	18.68	32.97	2.20	13.19	17.58	1.10	7.69	6.59	91(100.0)
	75 - 79	7.81	34.38	6.25	6.25	26.69	1.56	6.25	7.81	64(100.0)
	80세 이상	10.13	32.91	6.33	7.59	32.91	0.00	7.59	2.53	79(100.0)
결혼 상태	동거	16.07	36.90	4.76	7.74	23.81	0.60	4.76	5.36	168(100.0)
	별거	0.00	33.33	0.00	0.00	33.33	0.00	33.33	0.00	3(100.0)
	사기	11.36	30.68	5.11	8.52	30.68	0.57	6.82	6.25	176(100.0)
	타	0.00	0.00	0.00	0.00	0.00	0.00	100.0	0.00	2(100.0)

\* P<0.05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많이 보여졌다. 노인들의 醫療費를 부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본 것은 <표3-13>인데, 노인들이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는 대부분 아들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들의 의료비의 부담자는 60.2%가 아들이며 18.4%가 본인인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아들이 부담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노인들이 동거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고 노인들이 사별한 경우에는 아들이나 딸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대상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醫療惠澤의 種類는 <표3-14>와 같이 대부분이 직장 의료보험(47.6%)이나 지역의료보험(34.1%)이었으며, 영세민 의료보호혜택을 받는 노인은 전체의 11.2%이었다. 한편, 현재 시행하고 있는 老人健康診斷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것이 <표3-15>인데, 노인들의 37.1%는 노인건강진단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으며, 35.9%는 알고는 있었으나 기회가 없거나 노인건강진단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건강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27.0%의 노인만이 건강진단을 받아본 적이 있었다. 이는 현행 노인건강진단사업이 그 弘報와 運營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3-13> 본인진료비의 주된 부담자 %

구 분 \ 내 용		본인	배우자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외부 도움	기타	없음	N
Total	N %	64 18.4	16 4.6	209 60.2	15 4.3	6 1.7	7 2.0	6 1.7	9 2.6	15 4.3	347 100.0
성별***	남	26.22	2.44	60.98	3.05	1.22	0.61	0.61	2.44	2.44	164(100.0)
	여	11.48	6.56	59.56	5.46	2.19	3.28	2.73	2.73	6.01	183(100.0)
연령별***	60 - 64	37.50	14.58	31.25	4.17	2.08	0.00	2.08	0.00	8.33	48(100.0)
	65 - 69	28.36	5.97	55.22	2.99	1.49	0.00	0.00	1.49	4.48	67(100.0)
	70 - 74	16.48	4.40	65.93	4.40	0.00	0.00	1.10	4.40	3.30	91(100.0)
	75 - 79	17.74	1.61	61.29	3.23	4.84	0.00	4.84	1.61	4.84	62(100.0)
	80세 이상	1.27	0.00	74.68	6.33	1.27	8.86	1.27	3.80	2.53	79(100.0)
결혼상태***	동거	26.95	9.58	53.89	1.80	2.40	0.00	0.60	1.80	2.99	167(100.0)
	사별	33.33	0.00	33.33	0.00	0.00	0.00	0.00	0.00	33.33	3(100.0)
	사기	10.29	0.00	66.86	6.86	1.14	4.0	2.29	3.43	5.14	175(100.0)
	타	0.00	0.00	50.00	0.00	0.00	0.00	50.00	0.00	0.00	2(100.0)

\*\*\* P<0.005

<표3-14> 본인이 받고 있는 의료혜택의 종류 %

구 분 \ 내 용		직장의보	지역의보	의료보호	기타 의보	없음	N
Total	N %	166 47.6	119 34.1	39 11.2	1 0.3	24 6.9	349 100.0
성별	남	46.06	38.79	9.09	0.00	6.06	165(100.0)
	여	48.91	29.89	13.04	0.54	7.61	184(100.0)
연령별	60 - 64	50.00	27.08	14.58	0.00	8.33	48(100.0)
	65 - 69	53.73	32.84	5.97	0.00	7.46	67(100.0)
	70 - 74	48.35	32.97	12.09	1.10	5.49	91(100.0)
	75 - 79	46.88	40.63	10.94	0.00	1.56	64(100.0)
	80세 이상	40.51	35.44	12.66	0.00	11.39	79(100.0)
결혼상태	동거	51.79	34.52	9.52	0.00	4.17	168(100.0)
	사별	33.33	66.67	0.00	0.00	0.00	3(100.0)
	사기	44.32	33.52	12.50	0.57	9.09	176(100.0)
	타	0.00	0.00	50.00	0.00	50.00	2(100.0)

<표3-15> 노인 건강진단을 받아본 경험 %

구 분 \ 내 용		받아본적이 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알고 있으나 기회가 없어 받지 못함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N
Total	N %	94 27.0	72 20.7	53 15.2	129 37.1	348 100.0
성별	남 여	30.49 23.91	25.00 16.85	12.80 17.39	31.71 41.85	164(100.0) 184(100.0)
연령	60 - 64	22.92	10.42	18.75	47.92	48(100.0)
	65 - 69	32.84	13.43	23.88	29.85	67(100.0)
	70 - 74	27.78	28.89	15.56	27.78	90(100.0)
	75 - 79	29.69	25.00	10.94	34.38	64(100.0)
	80세 이상	21.52	20.25	8.86	49.37	79(100.0)
결혼상태	동거	30.95	25.00	13.69	30.36	168(100.0)
	거거	33.33	0.00	33.33	33.33	3(100.0)
	사기	23.30	16.48	16.48	43.75	176(100.0)
	타	0.00	100.0	0.00	0.00	1(100.0)

\* P<0.05

4. 조사대상자의 在家福祉서비스에 대한 態度

조사대상 노인들은 <표3-16>과 같이 在家老人들을 위한 家庭訪問奉仕에 대해서 7.6%만이 가정방문 봉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고 29.1%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63.4%는 한번도 가정방문 봉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표3-16> 재가 노인들을 위한 가정방문 봉사를 받은 경험 %

구 분 \ 내 용		자주 받는 편이다	가끔 받는 편이다	한두번 받은 적 있다	한번도 없다	처음 들어본다	N
Total	N %	3 0.9	3 0.9	20 5.8	220 63.4	101 29.1	347 100.0
성별	남 여	1.23 0.54	0.00 1.63	6.75 4.89	62.58 64.13	29.45 28.80	163(100.0) 184(100.0)
연령	60 - 64	2.08	0.00	4.17	70.83	22.92	48(100.0)
	65 - 69	0.00	0.00	5.97	59.70	34.33	67(100.0)
	70 - 74	1.10	1.10	2.20	65.93	29.67	91(100.0)
	75 - 79	1.56	1.56	12.50	64.06	20.31	64(100.0)
	80세 이상	0.00	1.30	5.19	58.44	35.06	77(100.0)
결혼상태***	동거	0.60	0.00	5.42	65.06	28.92	166(100.0)
	거거	0.00	0.00	33.33	0.00	66.67	3(100.0)
	사기	0.57	1.70	5.68	63.64	28.41	176(100.0)
	타	50.00	0.00	0.00	0.00	50.00	2(100.0)

\*\*\* P<0.005

그러나 <표3-17>과 같이 이들의 43.4%는 가정방문 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이 원하고 있었다.

<표3-17> 가정 방문 봉사활동에 대한 생각 %

구 분 \ 내 용		매우 필 요함	어느정도 필요함	별로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잘 모 르겠 다	N
Total	N %	45 12.9	106 30.5	124 35.6	44 12.6	29 8.3	348 100.0
성 별	남	13.41	34.15	32.93	14.02	5.49	164(100.0)
	여	12.50	27.17	38.04	11.41	10.87	184(100.0)
연 령	60 - 64	16.67	35.42	35.42	6.25	6.25	48(100.0)
	65 - 69	16.42	29.85	35.82	11.94	5.97	67(100.0)
	70 - 74	10.00	34.44	34.44	13.33	7.78	90(100.0)
	75 - 79	12.50	25.00	42.19	14.06	6.25	64(100.0)
	80세 이상	11.39	27.85	31.65	15.19	13.92	79(100.0)
성 인 태 도	동 등 별 사 기	11.31	33.33	38.69	11.90	4.76	168(100.0)
	거 거 별 타	0.00	33.33	33.33	33.33	0.00	3(100.0)
		14.20	27.84	32.95	13.07	11.93	176(100.0)
		100.0	0.00	0.00	0.00	0.00	1(100.0)

가정방문 봉사를 원하는 경우, 방문의 횟수는 <표3-18>과 같이 월1회나 월 2-3회를 원하는 경우가 28.8%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방문 봉사의 奉仕內容으로는 <표3-19>와 같이 말벗(상담, 조언, 책임어주기) 32.5%, 잔심부름 18.1%, 행정적인 사무대행 11.8%, 산책이나 운동시 동행 11.5%, 안마 10.9%, 절연이나 외부도움 알선 10.1%, 병간호 8.3%, 병원이나 보건소이용시 동행 8.1%, 청소나 세탁 7.8%, 부업거리나 일거리 알선 7.8% 등을 원하고 있었다.

<표3-18> 가정방문 봉사를 원하는 경우, 바람직한 방문 횟수 %

구 분 \ 내 용		매 일	주 1회	주 2-3회	월 1회	월 2-3회	기타	생각않 해봄	원하지 않음	N
Total	N %	9 2.6	31 8.9	10 2.9	58 16.7	42 12.1	2 0.6	27 7.8	169 48.6	348 100.0
성 별	남	43.66	6.10	1.83	20.12	15.85	0.61	4.27	47.56	164(100.0)
	여	1.63	11.41	3.80	13.59	8.70	0.54	10.87	49.46	184(100.0)
연 령	60 - 64	0.00	12.50	4.17	14.58	16.67	2.08	8.33	41.67	48(100.0)
	65 - 69	1.49	10.45	2.99	14.93	13.43	1.49	7.46	42.76	67(100.0)
	70 - 74	1.11	5.56	3.33	20.00	14.44	0.00	6.67	56.25	90(100.0)
	75 - 79	4.69	14.06	0.00	17.19	4.69	0.00	3.12	56.25	64(100.0)
	80세 이상	5.06	5.06	3.80	15.19	11.39	0.00	12.66	46.84	79(100.0)
성 인 태 도	동 동 별 사 기	2.38	7.14	1.79	19.64	14.29	1.19	2.98	50.60	168(100.0)
	거 거 별 타	0.00	0.00	0.00	33.33	0.00	0.00	0.00	66.67	3(100.0)
		2.84	10.80	3.98	13.64	9.66	0.00	12.50	46.59	176(100.0)
		0.00	0.00	0.00	0.00	100.0	0.00	0.00	0.00	2(100.0)

\* P<.05



성별로 보면, 청소나 세탁, 취사, 안마등은 여자가 많이 원하고 있었고 말벗, 산책이나 운동시 동행, 부업거리나 일거리 알선, 행정적인 사무대행은 남자들이 많이 원하고 있었다.

<표3-19> 본인이 원하는 가정방문 봉사의 내용 (3개 선택)

- 1) 말벗(상담, 조언, 책 읽어주기)    2) 청소나 세탁    3) 취사    4) 잔심부름
- 5) 산책이나 운동시 동행    6) 안마    7) 부업거리나 일거리 알선
- 8) 병원이나 보건소이용시 동행    9) 병간호    10) 결연이나 외부도움 알선
- 11) 행정적인 사무대행    12) 기타    13) 생각해 본적이 없다
- 14) 원하지 않는다

%

구 분 \ 내 용		1	2	3	4	5	6	7	8
Total	N %	113 32.5	27 7.8	12 3.5	63 18.1	40 11.5	38 10.9	27 7.8	28 8.1
성 별	여	35.4 29.9	5.5 9.8	2.4 4.3	17.7 18.5	15.2 8.2	9.1 12.5	9.8 6.0	6.7 9.2
성 별 연 령	60 - 64	43.75	4.17	6.25	18.75	16.67	8.33	12.50	6.25
	65 - 69	29.85	7.46	2.99	20.90	8.96	7.46	4.78	11.94
	70 - 74	33.33	10.00	3.33	18.89	10.00	12.22	10.00	6.67
	75 - 79	21.88	7.81	3.13	14.06	7.81	7.81	12.50	6.25
	80세 이상	22.79	7.60	2.53	17.72	15.19	16.46	1.27	8.86
성 별 연 령 대 별 선 택	동 거	30.36	5.36	2.98	14.88	11.91	12.50	8.33	5.36
	거 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3.33
	사 기 타	34.66	10.23	3.98	21.02	11.36	9.66	6.82	10.23
		100.0	0.00	0.00	0.00	0.00	0.00	100.0	0.00
구 분 \ 내 용		9	10	11	12	13	14	N	
Total	N %	29 8.3	35 10.1	41 11.8	19 5.5	23 6.6	167 48.0	348 100.0	
성 별	남	8.5 8.2	9.8 10.3	14.0 9.8	6.1 4.9	5.5 7.6	47.0 48.9	164(100.0) 184(100.0)	
성 별 연 령	60 - 64	8.33	8.33	6.25	14.58	8.33	39.58	48(100.0)	
	65 - 69	13.43	11.94	13.43	7.46	5.97	47.76	67(100.0)	
	70 - 74	6.67	11.11	15.56	0.00	5.56	47.78	90(100.0)	
	75 - 79	3.13	7.81	14.06	6.25	6.25	56.25	64(100.0)	
	80세 이상	10.13	10.13	7.60	3.80	7.60	46.84	79(100.0)	
성 별 연 령 대 별 선 택	동 거	8.93	9.52	13.69	6.55	5.36	50.60	168(100.0)	
	거 별	33.33	33.33	0.00	0.00	0.00	66.67	3(100.0)	
	사 기 타	7.39	10.23	10.23	4.55	7.96	45.45	176(1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00.0)	

5. 조사대상자의 老人停(경로당)利用에 관한 問題

조사대상 노인들의 餘暇活動을 조사한 것이 <표3-20>이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노인들의 39.0%는 여가시간을 노인정이나 노인복지시설에서 보내고 있으며 32.7%는 집안에서 보내고 있고, 10.9%는 친구들과 소일을 하고 있다. 직업을 가진 노인은 전체의 4.9%이었다.

<표3-20> 여가시간을 보내는 곳 %

구 분 \ 내 용		직업 있음	집안, 소일	친구 집	노인 정등	공원	친척 방문	거리 배회	기 타	N
Total	N %	17 4.9	114 32.7	38 10.9	136 39.0	15 4.3	6 1.7	15 4.3	8 2.3	349 100.0
성***	남 여	7.27 2.72	11.52 51.63	10.91 10.87	54.55 25.00	8.48 0.54	0.61 2.72	3.64 4.89	3.03 1.63	165(100.0) 184(100.0)
연***	60 - 64	10.42	39.58	12.50	12.50	6.25	6.25	6.25	6.25	48(100.0)
	65 - 69	7.46	41.79	11.94	29.85	4.48	1.49	1.49	1.49	67(100.0)
	70 - 74	4.40	27.47	12.09	47.25	2.20	2.20	1.10	3.30	91(100.0)
	75 - 79	4.69	26.56	14.06	45.31	6.25	0.00	3.12	0.00	64(100.0)
	80세 이상	0.00	31.65	5.06	48.10	3.80	0.00	10.13	1.27	79(100.0)
결***	동	8.33	20.83	10.12	47.02	6.55	1.19	2.98	2.98	168(100.0)
	거	0.00	0.00	0.00	66.67	33.33	0.00	0.00	0.00	3(100.0)
	사	1.70	44.32	11.93	31.25	1.70	2.27	5.11	1.70	176(100.0)
	타	0.00	50.00	0.00	0.00	0.00	0.00	50.00	0.00	2(100.0)

\*\*\* P<0.005

연령별로 보면, 70세미만의 노인들은 집안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많이 있었으며 70세이상의 노인들은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노인정이나 노인복지시설에서 보내는 경향이 강하였다. 또한 남자들은 노인정이나 노인복지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여자들은 집안에서 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부부가 동거하는 경우는 노인정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부부가 사별한 경우에는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었다.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관하여 살펴보면,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유는 <표3-21>과 같이 시간을 보낼수 있어서 18.1%, 마땅히 갈만한 다른 곳이 없어서 12.1%,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7.8%등이었다.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인정에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老人餘暇施設이나 老人福祉施設의 未備와 더불어 노인정이나 경로당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시사해 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가깝거나 집을 비울수 있다면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가겠다는 노인들이 많은 것을 보면 노인들의 여가활동영역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노인정을 이용하는 빈도를 살펴보면, <표3-22>와 같이 거의 매일 이용하는 비율이 28.2%로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절반을 넘고 있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빈도가 높았다. 노인들의 노인정이나 경로당이용시 느끼는 문제점을 조

사한 것이 <표3-23>이다. 노인들의 20.1%는 運營費의 不足을, 18.4%는 內·外部施設의 未備와 落後된 環境을, 그리고 11.2%는 組織活動의 未備를 노인정이나 경로당의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운영비의 부족에 대해서는 <표3-24>와 같이 정부의 보조(25.6%)나 지역 사회단체의 보조(8.9%)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같이 노인정이나 경로당의 문제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支援不足에서 오는 것이 많으며, 노인정의 프로그램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표3-21>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 1)마땅히 갈만한 다른곳이 없어서      2)친구를 만나기 때문에      3)마음이 편해서
- 4)시간을 보낼수있어서                      5)오락을 즐길수 있어서
- 6)정치나 사회문제를 논할수 있어서      7)기타                                      8)이용하지 않음

\*

구 분 \ 내 용		1	2	3	4	5	6	7	8	N
Total	N %	42 12.1	27 7.8	9 2.6	63 18.1	6 1.7	1 0.3	2 0.6	198 56.9	348 100.0
성별***	남	14.63 9.78	10.37 5.43	4.88 0.54	27.44 9.78	2.44 1.09	0.61 0.00	0.61 0.54	39.02 72.83	164(100.0) 184(100.0)
	여									
연령별***	60 - 64	0.00	0.00	4.17	2.08	4.17	0.00	0.00	89.58	48(100.0)
	65 - 69	8.96	5.97	1.49	14.93	1.49	0.00	2.99	64.18	67(100.0)
	70 - 74	13.33	8.89	3.33	26.67	0.00	1.11	0.00	46.67	90(100.0)
	75 - 79	18.75	12.50	4.69	12.50	3.12	0.00	0.00	48.44	64(100.0)
	80세 이상	15.19	8.86	0.00	25.32	1.27	0.00	0.00	49.37	79(100.0)
결혼상태*	동거	16.07	9.52	4.17	21.43	2.38	0.60	0.60	45.24	168(100.0)
	별거	0.00	0.00	33.33	33.33	0.00	0.00	0.00	33.33	3(100.0)
	사별	8.52	6.25	0.57	14.77	1.14	0.00	0.57	68.18	176(100.0)
	태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	1(100.0)

\* P<0.05      \*\*\* P<0.005

<표3-22> 본인이 1주일동안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횟수 \*

구 분 \ 내 용		거의 매일	주 3-4일	주 2-3일	주 1일	이용 안함	N
Total	N %	98 28.2	17 4.9	17 4.9	18 5.2	198 56.9	348 100.0
성별***	남	46.34 11.96	6.10 3.80	3.66 5.98	4.88 5.43	39.02 72.83	164(100.0) 184(100.0)
	여						
연령별***	60 - 64	2.08	2.08	0.00	6.25	89.58	48(100.0)
	65 - 69	14.93	2.99	13.43	4.48	64.18	67(100.0)
	70 - 74	30.00	8.89	3.33	11.11	46.67	90(100.0)
	75 - 79	39.06	4.69	4.69	3.12	48.44	64(100.0)
	80세 이상	44.30	3.80	2.53	0.00	49.37	79(100.0)
결혼상태***	동거	32.74	5.36	8.33	8.33	45.24	168(100.0)
	별거	33.33	33.33	0.00	0.00	33.33	3(100.0)
	사별	23.86	3.98	1.70	2.27	68.18	176(100.0)
	태	0.00	0.00	0.00	0.00	100.0	1(100.0)

\*\*\* P<0.005

<표3-23> 본인이 이용하는 노인정이나 경로당의 가장 큰 문제점 (2개 선택)

- 1)내, 외부시설의 미비와 낙후된 환경      2)특별히 하고 있는 조직활동이 없다  
3)여가 프로그램의 부족      4)운영비 부족      5)정부 보조금의 부족      6)기타  
7)잘 모르겠다      8)이용하지 않음

%

구분 \ 내용	1	2	3	4	5	6	7	8	N	
Total	N %	64 18.4	39 11.2	25 7.2	70 20.1	15 4.3	18 5.1	29 8.3	199 34.2	348 100.0
성별	남 여	25.0 12.5	12.2 10.3	8.5 6.0	31.1 10.3	7.9 10.9	9.1 1.6	11.0 6.0	39.6 72.8	164(100.0) 184(100.0)
연령별	60 - 64	6.25	4.17	2.08	6.25	2.08	0.00	0.00	89.58	48(100.0)
	65 - 69	17.91	17.91	4.48	19.40	4.48	2.99	1.49	64.18	67(100.0)
	70 - 74	27.78	12.22	11.11	31.11	4.44	4.44	5.56	46.67	90(100.0)
	75 - 79	18.75	14.06	9.38	17.19	4.69	10.93	10.94	50.00	64(100.0)
	80세 이상	15.19	6.33	6.33	18.99	5.06	6.33	20.25	49.37	79(100.0)
결혼상태	동거	25.60	16.07	10.12	29.76	4.17	5.95	7.74	45.24	168(100.0)
	거거	66.67	33.33	0.00	33.33	0.00	0.00	0.00	33.33	3(100.0)
	사별	10.80	6.25	4.55	10.80	4.55	4.55	9.09	68.75	176(100.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	1(100.0)

<표3-24> 부족한 노인정이나 경로당 운영비의 가장 바람직한 조달방법

%

구분 \ 내용	정부의 보조	지역단 체보조	찬조금	회비의 인상	기타	잘 모 르겠다	이용 안함	N	
Total	N %	89 25.6	31 8.9	13 3.7	6 1.7	2 0.6	9 2.6	198 56.9	348 100.0
성***	남 여	36.59 15.76	11.59 6.52	5.49 2.17	1.83 1.63	1.22 0.00	4.27 1.09	39.02 72.83	164(100.0) 184(100.0)
연***	60 - 64	8.33	2.08	0.00	0.00	0.00	0.00	89.58	48(100.0)
	65 - 69	19.40	11.94	1.49	1.49	0.00	1.49	64.18	67(100.0)
	70 - 74	34.44	8.89	4.44	4.44	0.00	1.11	46.67	90(100.0)
	75 - 79	25.00	14.06	6.25	0.00	1.56	4.69	48.44	64(100.0)
	80세 이상	31.65	6.33	5.06	1.27	1.27	5.06	49.37	79(100.0)
결* 혼 상 태	동거	33.93	11.90	4.17	0.60	1.19	2.98	45.24	168(100.0)
	거거	33.33	33.33	0.00	0.00	0.00	0.00	33.33	3(100.0)
	사별	17.61	5.68	3.41	2.84	0.00	2.27	68.18	176(100.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100.0	1(100.0)

\* P<0.05      \*\*\* P<0.005

6. 조사대상자의 老後對策 및 要求事項

여생을 어떻게 지내고 싶은가하는 질문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대답은 <표3-25>와 같다. 조사대상 노인들의 36.5%는 여생을 즐기고 싶다는 태도를 나타냈으며 22.7%는 집안일을 도우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표3-25> 남은 여생에 대한 태도 %

구 분 \ 내 용		직업활동 원함	사회봉사 활동원함	집안일을 돕겠다	여생을 즐 기겠다	생각을 안해봄	N
Total	N %	33 9.5	22 6.5	79 22.7	127 36.5	87 25.0	348 100.0
성 별***	남 여	14.02 5.43	8.54 4.35	8.54 35.33	43.39 30.43	25.61 24.46	164(100.0) 184(100.0)
연 령***	60 - 64	25.00	8.33	20.83	29.17	16.67	48(100.0)
	65 - 69	11.94	8.96	23.88	43.28	11.94	67(100.0)
	70 - 74	7.69	6.59	30.77	35.16	19.78	91(100.0)
	75 - 79	9.38	7.81	18.75	35.94	28.12	64(100.0)
	80세 이상	0.00	1.28	16.67	37.18	44.87	78(100.0)
결 혼 구 태***	동	13.69	6.55	17.86	42.26	19.64	168(100.0)
	거	0.00	33.33	0.00	0.00	66.67	3(100.0)
	사	5.14	5.71	28.00	32.00	29.14	175(100.0)
	기	50.00	0.00	0.00	0.00	50.00	2(100.0)

\*\*\* P<0.005

社會奉仕活動을 하거나 여력이 있는 한 職業活動을 하고 싶다는 태도를 갖은 사람은 전체의 16.0%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들은 직업활동(14.02%)이나 사회봉사활동(8.54%)에 있어 여자보다 더 적극적이었으며, 여자들은 집안일을 도우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태도를 남자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냈다. 즉, 남자들의 8.54%가 집안 일을 돕겠다는 태도를 보인데 반해 여자들은 35.33%가 집안일을 돕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노후대책을 정리한 것이 <표3-26>이다. 노인들의 54.2%는 자식에게 의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태도는 여자에게서,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부부가 사별한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25.5%였으며 12.6%는 부동산확보를 노후대책으로 가지고 있었다. 보험이나 국민연금 또는 저축을 노후대책으로 가지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5.5%였으며, 유료양노원이나 시설수용을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1.7%에 불과하였다. 부동산확보라는 노후대책은 남자에게서, 연령이 낮을수록 많이 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알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노후

직업활동보다는 자식에게 의지하는 편안한 노후생활을 추구하고 있으며, 별다른 노후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양로원이나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인들의 社會的인 役割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核家族化傾向은 대가족적인 가족형태를 약화시키고 있고, 젊은이들은 부모를 모시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뿐만아니라 公的領域의 老人福祉는 社會적인 노령화현상을 따라갈만큼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 않다. 바로 여기에 노인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다.

<표3-26> 본인인 가지고 있는 노후대책 \* %

구 분 \ 내 용		부동산 확보	국민연금	사보험	퇴직금	저 축	
Total	N %	44 12.6	2 0.6	1 0.3	1 0.3	16 4.6	
성별*	남	16.36	0.61	0.00	0.61	6.06	
	여	9.24	0.54	0.54	0.00	3.26	
연령별***	60 - 64	22.92	4.17	2.08	2.08	6.25	
	65 - 69	16.42	0.00	0.00	0.00	8.96	
	70 - 74	13.19	0.00	0.00	0.00	4.40	
	75 - 79	14.06	0.00	0.00	0.00	3.12	
	80세 이상	1.27	0.00	0.00	0.00	1.27	
결혼상태***	동거	20.24	1.19	0.60	0.60	5.95	
	별거	0.00	0.00	0.00	0.00	33.33	
	사기	5.68	0.00	0.00	0.00	2.84	
	타	0.00	0.00	0.00	0.00	0.00	
구 분 \ 내 용		자식에게 의지	유료양료원 이용	무료시설 이용	기 타	무 대책	N
Total	N %	189 54.2	2 0.6	4 1.1	1 0.3	89 25.5	349 100.0
성별*	남	44.24	1.21	1.82	0.00	29.09	165(100.0)
	여	63.04	0.00	0.54	0.54	22.28	184(100.0)
연령별***	60 - 64	33.33	2.08	0.00	0.00	27.08	48(100.0)
	65 - 69	52.24	0.00	1.49	0.00	20.90	67(100.0)
	70 - 74	53.85	0.00	0.00	0.00	28.57	91(100.0)
	75 - 79	54.69	1.56	0.00	1.56	25.00	64(100.0)
	80세 이상	68.35	0.00	3.80	0.00	25.32	79(100.0)
결혼상태***	동거	38.10	1.19	1.19	0.00	30.95	168(100.0)
	별거	66.67	0.00	0.00	0.00	0.00	3(100.0)
	사기	69.89	0.00	1.14	0.57	19.89	176(100.0)
	타	0.00	0.00	0.00	0.00	100.0	2(100.0)

\* P<0.05      \*\*\* P<0.005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一般的인 問題를 조사한 것이 <표3-27>이다. 조사대상 노인들의 39.5%는 健康問題를, 23.8%는 經濟力不足을 그리고 2.0%는 疎外感을 가지고 있었

다. 건강문제나 경제력부족의 문제는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많이 보여졌으며, 소외감은 75세이상의 노인들에게서만 보여졌다. 거주지역에서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표3-28>과 같다. 37.0%의 노인들이 노인정 등 福祉施設擴充이라고 대답하였으며, 31.8%는 무료진료시설 및 노인상담시설을, 25.8%는 불우노인결연 및 원조사업을, 그리고 23.8%는 노인 공동작업장이 지역에서 노인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표3-27> 본인의 가장 큰 문제점

- 1)없다      2)건강문제      3)경제력 부족의 문제      4)거처불안정의 문제  
5)세대갈등이나 집안불화의 문제 6)여가활동 공간의 부족문제 7)소외감  
8) 기타

구 분 \ 내 용		1	2	3	4	5	6	7	8	N
Total	N %	83 23.8	138 39.5	83 23.8	9 2.6	11 3.2	4 1.1	7 2.0	14 4.0	349 100.0
성별***	남 여	27.27 20.65	35.76 42.93	17.58 29.35	3.64 1.63	4.85 1.63	1.21 1.09	2.42 1.63	7.27 1.09	165(100.0) 184(100.0)
연령 별	60 - 64	33.33	39.58	16.67	4.17	0.00	0.00	0.00	6.25	48(100.0)
	65 - 69	32.84	31.34	25.37	4.48	4.48	0.00	0.00	1.49	67(100.0)
	70 - 74	23.08	37.36	30.77	3.30	2.20	0.00	0.00	3.30	91(100.0)
	75 - 79	25.00	29.69	25.00	1.56	6.25	6.25	3.12	3.12	64(100.0)
	80세 이상	10.13	56.96	17.72	0.00	2.53	0.00	6.33	6.33	79(100.0)
결연 상태	동 거	28.57 0.00	35.71 33.33	20.83 33.33	2.38 33.33	5.36 0.00	0.60 0.00	1.79 0.00	4.76 0.00	168(100.0) 3(100.0)
	사 별	19.89	43.18	26.14	2.27	1.14	1.70	2.27	3.41	176(100.0)
	기 타	0.00	50.00	50.00	0.00	0.00	0.00	0.00	0.00	2(100.0)

\*\*\* P<0.005

또한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노인은 전체의 8.0%였으며, 11.7%의 노인들은 노인취업활동을, 그리고 10.9%는 경노사상고취를 위한 의식개혁운동이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노인 공동작업장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원하고 있었으며, 노인취업활동은 남자들이 더 원하고 있었다. 노인복지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것이 <표3-29>이다. 조사대상 노인들의 42.9%는 老人手當(노인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36.7%는 새로운 敬老優待制度의 實施를, 22.9%는 餘暇活動의 財政的 支援을, 20.3%는 老人 醫療制度의 確立을, 18.9%는 老人福祉施設의 擴充을, 12.0%는 경노사상고취를 위한 意識改革運動을 국가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노인취업을 위한 직업알선을 바라는 노인은 8.3%였으며 재가 노인복지서비스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노인은 1.4%이었다. 새로운 경노우대제도의 실시는 남자가 여자보다 그리고 연령이 높

을수록 더 원하고 있었으며, 노인취업알선은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더 원하고 있었다. 또한 노인수당(노인연금)의 지급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원하는 경향이 강하게 보여졌다.

<표3-28> 거주지역에서 노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것 (2개 선택)

- 1) 무료진료시설이나 노인상담시설      2) 노인대학이나 노인학교      3) 노인 공동작업장
- 4) 불우노인결연및 원조사업              5) 노인을 위한 가정방문 봉사활동  
(재가복지 서비스)
- 6) 노인정등 노인복지시설 확충          7) 노인 취업알선활동              8) 노인위안잔치
- 9) 경노사상고취를 위한 의식개혁운동    10)기 타                              11)없다

%

구 분 \ 내 용		1	2	3	4	5	6
Total	N %	111 31.8	26 7.5	83 23.8	90 25.8	28 8.0	129 37.0
성별	남 여	29.7 33.7	8.5 6.5	18.2 28.8	27.9 23.9	7.3 8.7	38.8 35.3
연령별	60 - 64	18.75	8.33	33.33	22.92	2.08	41.67
	65 - 69	31.34	11.94	28.36	23.33	7.46	41.79
	70 - 74	29.67	7.69	26.37	34.07	7.69	37.36
	75 - 79	34.38	7.81	28.13	26.56	12.50	25.00
	80세 이상	40.51	2.53	7.59	18.99	8.86	39.24
결혼상태	동거	32.74	9.52	17.86	32.14	4.76	39.29
	거거	0.00	0.00	33.33	66.67	33.33	0.00
	사기타	31.25	5.68	28.98	18.75	10.80	35.23
	기타	50.00	0.00	50.00	50.00	0.00	50.00
구 분 \ 내 용		7	8	9	10	11	N
Total	N %	41 11.7	53 15.2	38 10.9	15 4.3	39 11.2	349 100.0
성별	남 여	13.9 9.8	14.5 15.8	11.5 10.3	4.2 4.3	11.5 10.9	165(100.0) 184(100.0)
연령별	60 - 64	22.92	10.42	18.75	6.25	6.25	48(100.0)
	65 - 69	14.93	11.94	8.96	0.00	8.96	67(100.0)
	70 - 74	12.09	13.19	8.79	2.20	9.89	91(100.0)
	75 - 79	12.50	17.19	9.38	6.25	9.38	64(100.0)
	80세 이상	1.27	21.52	11.39	7.59	18.99	79(100.0)
결혼상태	동거	13.69	15.48	9.52	3.57	10.12	168(100.0)
	거거	0.00	33.33	33.33	0.00	0.00	3(100.0)
	사기타	10.23	14.77	11.93	5.11	12.50	176(100.0)
	기타	0.00	0.00	0.00	0.00	0.00	2(100.0)



<표3-29> 노인복지를 위해 국가가 시급히 해야 할 일 (2개 선택)

- 1) 노인수당(노인연금)지급 2)노인의료제도의 확립 3)주택자금의 보조
- 4)노인취업을 위한 직업알선제도의 확립 5)새로운 경로우대제도의 실시
- 6)노인부양자에 대한 세금공제 확대 7)노인복지시설 확충
- 8)경노사상고취를 위한 국민의식개혁운동
- 9)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확대
- 10)노인들을 위한 가정방문 봉사활동(재가 노인복지서비스)제도의 정착
- 11)기 타 12)잘 모르겠다.

\*

구 분 \ 내 용		1	2	3	4	5	6
Total	N %	150 42.9	71 20.3	20 5.7	29 8.3	128 36.7	14 4.0
성별	남 여	44.2 41.9	18.2 22.3	5.6 6.0	6.7 9.8	41.2 32.6	3.6 4.4
연령	60 - 64	33.33	18.75	2.08	18.75	31.25	6.25
	65 - 69	38.81	22.39	4.48	17.91	34.33	1.49
	70 - 74	47.25	16.48	7.69	5.49	45.05	5.49
	75 - 79	51.56	18.75	9.38	4.69	46.88	3.13
	80세 이상	40.51	25.32	3.80	0.00	24.05	3.80
결혼상태	동거	45.83	19.05	3.57	8.93	42.86	5.36
	별거	66.67	0.00	66.67	0.00	0.00	0.00
	사기	39.77	21.02	6.82	7.96	31.82	2.84
	타	50.00	100.0	0.00	0.00	0.00	0.00

  

구 분 \ 내 용		7	8	9	10	11	12	N
Total	N %	66 18.91	42 12.03	80 22.92	5 1.43	14 4.01	43 12.32	349 100.0
성별	남 여	17.58 20.11	14.54 9.78	23.03 22.83	0.00 2.72	4.85 3.26	10.30 14.13	165(100.0) 184(100.0)
연령	60 - 64	31.25	14.58	22.92	0.00	6.25	10.42	48(100.0)
	65 - 69	22.39	20.90	26.87	0.00	4.48	2.99	67(100.0)
	70 - 74	13.19	9.89	29.67	4.50	2.20	7.69	91(100.0)
	75 - 79	9.38	10.94	20.31	0.00	4.69	10.94	64(100.0)
	80세 이상	22.78	6.33	13.92	1.27	3.80	27.85	79(100.0)
결혼상태	동거	19.05	12.50	25.60	0.00	4.76	6.55	168(100.0)
	별거	33.33	33.33	0.00	0.00	0.00	0.00	3(100.0)
	사기	18.18	11.36	21.02	2.84	3.41	18.18	176(100.0)
	타	50.00	0.00	0.00	0.00	0.00	0.00	2(100.0)

7. 要 約

調査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1) 조사대상자의 年齡은 60세 - 79세가 전체의 77.4%이었고 80세 이상이 22.6%이었으며, 학력은 대부분이 국민학교졸업이하이고 고등학교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은 전체의 6.6%에 지나지 않았다.

2) 조사대상자들의 結婚狀態는 사별이 50.4%, 부부동거가 48.1%로 보여졌다.

3) 조사대상자들의 住宅所有形態는 자가(허가)가 70.1%로 가장 많이 보였고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방의 수는 대개 3개이하였으며, 1개의 방에서 가족이 전부 생활하는 경우도 13.5%나 되었다.

4) 조사대상자들의 44.4%는 결혼한 아들내외와 동거하고 있었으며 22.6%는 노인내외만 그리고 14.3%는 미혼자녀와 동거를 하고 있었다. 또한 노인이 단독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10.9%나 되었다.

5) 조사대상자들의 88.8%는 生活保護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았으며 3.7%가 거택보호를, 0.9%가 자활보호를 그리고 6.6%가 의료부조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6) 조사대상 가족의 2.6%는 所得이 전혀 없었으며, 가족의 주소득원은 대개가 아들이었다.

7) 조사대상 노인들의 主收入源은 70.8%가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었으며 13.8%는 본인의 직접수입이었다. 이들의 한달 용돈은 대개가 10만원이하였으며 1만원미만으로 한달 용돈을 충당하는 경우도 전체의 13.5%나 되었다.

8) 조사대상자의 55.3%는 건강하지 못한 편이었으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疾患에는 신경통, 고혈압, 신체장애(중풍), 천식이나 기관지질환, 위장병등이 있었다. 또한 이들은 개인병원이나 약국을 주로 이용하는 편이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질환의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전체의 6.6%이었다.

9) 조사대상자들의 醫療費는 대부분 아들(60.2%)이나 본인(18.4%)이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받고 있는 醫療惠澤의 종류는 대부분 직장의료보험이나 지역의료보험이었다. 이들은 또한 현행 老人健康診斷事業에 대해 무지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많이 지니고 있었다.

10) 조사대상자들은 在家老人을 위한 家庭訪問奉仕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으며, 가정방문봉사는 월 1회나 월 2-3회정도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봉사의 내용으로는 말벗이나 간담부름 또는 행정적인 사무대행이나 산책시 동행과 같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1) 조사대상노인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거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인정이나 경로당등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노인정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運營費의 부족이나 落後된 施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12) 조사대상자들은 노후를 즐기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老後對策으로는 자식에게 의지한다는 태도(54.2%)나 아무런 대책이 없다(25.5%)는 태도를 많이 나타내었다.

13) 조사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一般的인 問題는 대부분 健康과 經濟力의 문제

였으며, 거주지역에서 노인들을 위해 필요한 것은 노인정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나 무료진료시설 및 노인상담시설, 불우노인 원조사업, 노인 공동작업장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국가가 노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노인수당(노인연금)의 지급이나 새로운 경노우대제도의 실시, 그리고 노인여가활동의 재정적 지원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다.

#### IV. 在家老人 福祉政策의 改善을 위한 提言

한국사회는 급속한 老齡化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령인구의 절대적 수치가 늘어나고 있고 노령인구의 증가속도는 다른 인구의 증가속도를 훨씬 앞지르고 있어 문제를 가진 노인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인구노령화는 90년 현재 5.0%(65세 기준)로 노령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그리 심각한 편은 아니지만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장래의 예측에 기초한 예비적 우려의 성격을 가미해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현상과 아울러 핵가족화 - 1985년 핵가족형 가구는 전체가구의 68.8% -, 소가족화 - 1990년 1가구당 가족수는 3.8명, 2000년의 1가구당 가족수는 3.2명으로 예측 - 등의 가족구조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8년에 45% - 및 가족의 전통적 부양의식의 변화등에 기인하여 가족의 노인부양능력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1988년 현재 60세이상 자녀와 별거하는 독신 또는 부부가구인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5.2%, 노인가구의 22.9%로 노인단독가구가 노년기의 보편적 가구형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sup>5)</sup>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요보호노인인구의 증가에 직면하여 최근에 보다 많은 관심이 노인들과 연관된 분야에 주어지고 있고, 사회복지의 분야에서도 老人福祉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시도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노인문제를 개인적 및 가족적 차원의 문제로 생각하고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이며 정책적인 차원의 해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

5) 보건사회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보건의료, 사회보장 부문 계획(1992-1996), p. 301, (1992)

의 조직적 제반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 노인문제의 핵심을 健康과 經濟力 그리고 疎外感이라고 보았을 때 그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해결의 과정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계획, 조직 및 서비스전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건강과 경제력 그리고 소외감을 중심으로 本 調査研究의 結果를 토대로 마련한 在家老人 福祉增進을 위한 提言은 다음과 같다.

### 1. 在家老人 福祉政策의 基本方向

재가노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가지로 설정될 수 있다.

#### 1) 國民的 最低水準의 生活維持

노인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의 경제적 및 사회적 여건에 맞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한의 경제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최저생활수준을 설정하는 기준에 대한 합의된 이론은 없지만 적어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에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 2) 社會的 統合의 維持

노인은 일반적으로 퇴직으로 인하여 사회적 역할을 상실함으로써 사회로부터의 소외와 고립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또한 가정에서도 경제적 역할의 상실, 지적 및 가치적 갈등으로 인하여 소외와 고립감을 느끼기 쉽다. 그러므로 노인복지 정책의 모든 프로그램은 이들을 사회체계속에 연결시켜주는데 노력해야 한다.

#### 3) 個人의 成長欲求 充足

노령기는 인간의 성장발달단계의 마지막 단계로서, 이 시기에 있는 개인은 개인으로서 특수한 발전의 욕구가 있고 또한 성공적인 노령기 삶을 위한 발달과업이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 정책의 모든 프로그램은 노인이 개인으로서 자기의 고유하고 특수한 욕구를 충족하고 또한 노령기의 발달적 과업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 2. 在家老人의 所得保障을 위한 政策의 改善方向

#### 1) 停年制의 延長

우리나라의 정년제는 대부분 55-60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어 노인이 아닌 노인을 양산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년퇴직한 사람이 노동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조건에 알맞는 또다른 직업을 갖기는 매우 어렵다.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조기퇴직은 所得과 社會的 役割, 地位를 한꺼번에 박탈하게 되고, 생활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경제력문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정년의 연장을 통해 노인들이 職業活動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소득과 생활을 보장하게 하는 방법이 제기되어질 수 있다. 물론, 정년의 연장은 국가전체적인 고용수급계획하에서 청소년의 취업, 실업률, 기술확보, 생산성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정년의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년의 연장은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고려하여 국,공립기관에 60세 이상으로의 정년연장을 우선 적용하고, 55세 조기정년이 일반화되어 있는 민간기업체에 대해서는 정년연장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60 - 65세의 노인을 대상으로 감액임금이나 시간제 근무등을 통해 정년후 재취업을 유도하는 것도 정년의 연장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고급인력 및 기능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기업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미국에서는 1978년에 법으로 정년제를 폐지하였으며, 일본의 기업들은 종신고용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유럽의 여러나라에서는 사회보장의 연금수급연령을 65세 또는 70세까지 연장함으로써 노령인구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sup>6)</sup>

## 2) 老人就業의 擴充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년제와 더불어 논의될 수 있는 것은 노인취업 확충방안이다. 한국의 노인들은 가족의존도가 높고 개인적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며, 노후소득을 위한 사회보장제의 미비로 인해 대부분의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등의 수급자를 포함하더라도 전체 노인의 1% - 1.2%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공적부조의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은 65세이상 노인의 약 15.1%에 이르고 있으나 보호의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sup>7)</sup> 노인의 취업기회는 노동능력의 저하와 조기정년제등으로 인하여 제한되지만 노인의 약 1/3정도가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노인취업기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의 취업기회증대와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노인능력은행과 노인공동작업장의 절대수와 운영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아울러 노인의 취업을 촉진할

6) 丁千斗, "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전남대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P.37, (1991)

7) 보건사회부, 前掲書, P.302, (1992)

수 있는 노인적성에 맞는 직종개발이 미흡하고 퇴직후 재고용제도등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서 노인의 취업기회는 더욱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1981년에 제정된 한국의 노인복지법에서는 제2조의 권리조항에서 능력에 따라 노인이 적당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활동에의 적극적 참여를 권장하고 있고, 同條의 의무조항에서는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취업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으며 - 일본의 경우 「중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있음 - , 노인의 노동권리와 의무는 이념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노인취업의 확충은 정년제의 연장과 더불어 노인들의 職業活動을 통해 노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노인들의 취업확충을 위해서는 강력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시행이 있어야 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시책들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 ① 노인취업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의 제고

앞으로의 노령인구계층은 과거와 같이 사회적 활동능력이 급격히 감퇴하거나 사회의 보호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보호하고 지탱해주는 계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의 노동력을 유희노동력화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수 없다. 법률적, 제도적 준비를 서둘러 이들을 생산활동에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과거의 노령자계층에 기초하여 형성되어 있는 사회의 노령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새롭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노인취업에 대한 기본시각이 '노인을 위한 노인취업'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노인취업'으로 바뀌어져야 하며, 정책당국의 노력에 부가하여 노인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조장해 줄 필요가 있다.

#### ② 노인취업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전환

노인취업의 장해요인은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불비에도 있지만 노인들의 의식구조에도 문제가 있다. 노인들 스스로 노년기의 사회적 활동범위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충하여 노년기에 알맞는 생의 목표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여생에 있어서의 일의 의미를 사회와의 관련하에서 파악하여 주체적으로 그에 순응해 가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 ③ 노인단체의 활성화

노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결집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고 독자적인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노인단체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노인회가 국민학교 학군단

위로 편성되어 있으나 아직은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실정이며 지역노인회의 가용자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적절한 규모로 재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노인단체의 사업내용을 고도화하여 노인인력공급센터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노인문화예술활동의 중추적 조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④ 노인직업안정기구의 설립

노인취업을 확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필요한 정보를 노인들에게 제공하거나 노인들을 그 일에 연결시켜 주는 일에서부터 노인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그러한 직종에 노인들을 우선 취업시키거나 또는 우선 허가해주는 제도자체를 발전시키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인취업 확충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취업에 관한 情報를 가지고 있는 기관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시행이 되든지 아니면 독자적인 시설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독자적인 시설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노령자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전담하는 노인 직업안정기구를 설립하고, 정년퇴직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와주는 상담실을 부설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⑤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의 활성화

현재 노인능력은행은 6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노인공동작업장은 21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동작업장에는 200만원의 개발비를 그리고 노인능력은행에는 월 3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들의 소득향상과 취업기회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sup>8)</sup> 그러나 이들의 운영실적은 대단히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구들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효과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체 및 시장경제와의 협조를 정부측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능력은행은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시, 군, 구당 1개소씩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작업장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노인이 직접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자립화를 유도하되 설치비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 3) 國民年金 任意加入者에 대한 補助費 支給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피용자나 사용자는 강제가입을 시키고 있으나, 농어촌거주자나 자영업자는 임의가입을 시키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8) 姜允求, "한국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고찰",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석사 학위논문, P.17, (1989)

노후의 소득보장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임의가입자들은 각출금을 분담해줄 사용자가 없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이유때문에 연금에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의 연금가입을 촉진함으로써 노후의 소득보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각출금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4) 노령부조(수당)의 지급

연세 노인단독세대에 대한 생활보호법상의 급여와는 별도로 모든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노령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노령수당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최소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방법이 될수 있다.

### 3. 在家老人의 醫療保障을 위한 政策의 改善方向

현재 한국에서 노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예방적 조치는 무료 건강진단제도 이외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무료건강진단제도 역시 치료대책의 미흡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만성퇴행성 질환의 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종합병원내 노인병과 또는 노인병원은 전무한 실정이며, 의료기관의 편중현상과 보건소의 노인진료 및 요양기능의 미비로 인하여 만성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적합한 보건의료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그리고 노인들의 의료보험 본인부담율이 타 연령층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고, 65세이상 노인의 의료보호 수혜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불어 가정내 수발인력의 부족현상과 아울러 노인수발과 간호에 대한 가족부양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러한 가족기능을 보완, 대체해 줄 수 있는 관련제도는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시책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1) 醫療保險 및 醫療保護의 給與調整

현재의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급여는 노인건강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노인은 일반 비노인층에 비하여 유병률(상병률)이 2-3배 정도이고 질병이 만성적이고 병발적이어서 의료비용이 높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60세이상 노인의 진료비에서 자기부담률 - 본인 일부부담금 -을 일반보다는 낮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질병이 대개 만성적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해 의료보험의 요양급여일수를 현행의 연간 180일보다 더 연장시켜줄 필요가 있다 - 현행의 의료보험제도에서도 보험자의 급여비용이 연간 30만원미만인 경



우에 한하여 30만원에 이를때까지 요양급여일수를 연장해주고 있으나 노인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급여비용에 관계없이 요양급여일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의 경우 질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청각 및 시각의 약화로 보청기 또는 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에 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료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2) 老人保健醫療體系의 樹立

노인보건의료체계의 수립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노인진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노인병 전문요원 및 가정간호사등을 배치하여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건소의 일차적 노인진료기능을 강화하고, 노인질병의 특성과 보다 효율적인 진료를 위하여 종합병원내에 노인병동(과)의 병설을 유도하거나 노인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인전문병동이나 노인전문병원에서의 진료는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인에게 흔한 시한부 질병환자의 간호 및 이에 관련된 사회적 및 심리적 면에서의 서비스도 향상, 발전시킬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환자의 퇴원후 요양을 원조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을 증설하고 시설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중간형 시설인 노인전문진료요양시설을 6대도시에 1개소씩 설치, 운영한 후 각 시도별로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 3) 晝間保護所 및 家庭看護制度의 實施

노인환자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의 가족내 통합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연계하여 주간보호소(day care center)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병상부족문제를 완화하고 노인의 재가보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정간호제도를 실시하고, 일상생활의 유지에 애로를 겪는 노인에 대하여 가족의 노인 부양기능을 보완 또는 대체하기 위해서 가정봉사원제도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정간호제도나 가정봉사원제도는 가정통원 의료보호 서비스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의료 및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 4) 老人健康診斷制度의 改善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20여만명에 대하여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해 온 노인무료건강진단제도는 치료대책의 미흡과 노인들의 무관심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무료건강진단제도는 60세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개방하고 진료과목을 확대함과 동시에 진단결과에 따른 치료대책을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하에서 수립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노인들의 이용율을 증진시키고 실질적인 노인건강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제도의 내실화를 추구해야 한다.

#### 5) 老人健康相談室 設置

건강문제는 노인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조사에서도 많은 노인들이 지역단위의 무료진료소나 건강상담실의 설치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현행의 노인건강진단체도는 조사에서도 보여지듯이 그 효과가 의문시된다. 따라서 각 區별로 老人健康相談室을 설치하여 노인건강진단 및 상담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노인건강진단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醫療的 貧困線' 이하의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적인 의학적 검사를 내용으로 최소한 1년에 1번은 시행되어야 하며, 노인건강상담은 방문자에 대한 수동적인 상담이외에도 적극적인 在家巡廻訪問相談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가 순회방문상담은 종합복지관에서 199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在家福祉서비스와 연계시켜 실시해도 좋다. 또한 노인건강상담실은 노인건강진단의 결과에 따라 질병이 발견된 노인들의 정밀검사나 치료를 위해 상위의 의료기관과 체계적인 연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단위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속에서 지역별로 영세노인세대의 질병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 4. 在家老人의 住宅保障을 위한 政策의 改善方向

노인에 대한 주택보장은 소득보장, 의료보장과 함께 노인복지를 위한 기본적인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에 대한 주택보장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제12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택의 건설을 조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주택부족현상, 노인부양의 의무는 자녀에게 있다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 노인들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의 결여등으로 노인을 위한 주택개발과 보급정책은 거의 고려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재가노인의 주택보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책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1) 3세대 同居型 住宅構造의 開發 및 普及

노인의 가족형태의 다양화를 인정하면서도 주택공급사정, 우리 가족제도의 전통적 장점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3세대가 동거하면서 노인세대와 자녀세대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구조를 개발하고 이를 선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3세대 동거형은 세대간의 상호의존 속에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주택구조의 개발로 발전될 수 있고 이러한 주택구조를 택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3세대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혜택, 입주우선권 부여, 주택자금 할증지원액 확대등의 실질적인 정책적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 2) 老人單獨世代用 住宅構造의 開發

노인단독세대의 증가에 맞추어 노인단독세대를 위한 주택구조모형을 개발하여 새로 건립하는 아파트에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노인가족의 공간은 클 필요가 없으므로 15평정도를 모형으로 하여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아파트 건립시 노인전용층 및 전용아파트를 포함시키도록 장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 老人福祉住宅의 建立

부양자가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독신가구 및 부부가구의 노인을 위해서는 저렴한 요금으로 주거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의 건립을 추진해야 하며, 주택 임대료 보조제도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 더불어 자기주택 소유자이지만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위해서는 주택담보 연금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 5. 在家老人을 위한 社會的 서비스 프로그램의 改善方向

노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는 노인의 다양한 문제나 욕구 및 위기와 긴장, 무력감에 대체하려는 노력이며, 이러한 사회적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인 제 측면의 서비스를 내포하고 있다.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책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1) 老人綜合福祉館의 設置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중 물질적 서비스와 의료적 서비스를 제외한 社會的 서비스를 地域單位로 組織化하기 위해 시, 도별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sup>9)</sup> 이러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역단위의 노인복지프로그램을 계획, 수행하고 관할구역의 각종 노인복지시설이나 기관의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하며, 각종 노인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또한 앞에서 제시한 노인 건강상담실을 부속기관으로 둘 수도 있다. 이러한 老人綜合福祉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 지역내의 사회복지기관이나 공공건물등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될 수도 있을 것이며, 다목적적인 노인복지센터의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들의 개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② 노인들의 집단활동 ③ 노인들을 위한 취미 및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과 공간제공 ④ 실비의 공동식사 제공 ⑤ 건강

9) 1991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의 노인종합복지관은 2개소에 불과하다.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⑥ 각종 생활정보 제공 및 교양강좌 ⑦ 취업(혹은 시간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과 알선 ⑧ 법률상담 ⑨ 관할 노인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위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시지도.

## 2) 老人會館 建立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과 여가선용을 조성하기 위한 노인회관을 시,도별로 건립하고 이의 운영을 지역별 노인회에 일임한다. 이러한 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으며, 노인대학의 운영,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과 건의, 노인회 조직의 체계화 지도, 노인 위주의 연구소 설립등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 3) 老人在家福祉서비스의 擴大實施

재가복지서비스는 소년,소녀가장이나 영세장애인세대, 또는 영세노인단독세대와 같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家庭訪問 奉仕活動을 말하며 종합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예산을 토대로 실시되어진다. 재가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주어지는 서비스의 내용에는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 정서적 서비스, 결연서비스, 의료서비스, 자립지원서비스, 주민교육서비스등이 있다. 이러한 재가복지서비스는 自願奉仕者 組織과 敎育에 따라 그 효과에 큰 차이가 있을 정도로 방문봉사자들이 대상자에게 밀착됨으로써 대상자들의 욕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볼때, 이러한 재가복지 서비스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로서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노인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 4) 無料給食所의 擴大

불우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은 현재에도 시행이 되고 있지만 그 수를 확대하여 각 區별로 최소한 1개이상의 급식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무료급식소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도 있으며, 그 운영에 정부의 補助金을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주어지는 음식의 질을 일정수준이상 유지해야 할 것이다.

## 5) 老人停에 대한 支援擴大

노인들의 여가시설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노인정이나 경로당인데, 조사에서 보여지듯이 많은 노인정이나 경로당이 運營費의 不足 및 施設의 落後性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에서 노인정이나 경로당이 노인들의 여가활동공간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

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절기에 난방비의 부족으로 문을 닫는 노인정도 있는 데, 시설의 유휴화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동절기에 난방비 보조를 충분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노인정이나 경로당의 운영비는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경비를 각출할 수도 있으나 노인들의 용돈액수를 고려할 때, 충분한 정도의 경비각출을 노인들에게 기대하기는 힘들다. 또한, 낙후된 시설은 개선을 해야 할 것이며, 노인당이나 경로당에서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필요도 있다.

#### 6) 地域單位의 새로운 敬老優待制度의 實施

많은 노인들은 과거의 경노우대제도가 절차상의 여러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폐지되고 승차권을 지급받게 되면서 부터 노인들에 대한 정부의 도움이나 관심이 적어지고, 노인복지의 수준이 낮아졌다고 느끼고 있다. 과거의 경노우대제도는 제도자체의 결함보다는 당국의 계몽부족과 해당업체 및 일반인의 이해부족으로 그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으며 제도시행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여 시행상의 마찰소지를 축소시키고 경노우대를 強制規定化함으로써 구속력을 부여하여 노인들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준다면 경노우대제도는 별다른 마찰없이 시행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경노우대제도는 지역성을 살려 과거의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한편, 승차권지급은 계속하되 개인에게 지급되는 승차권의 수량을 늘리고, 시내버스뿐만이 아니라 시외버스 승차권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강윤구, "한국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고찰",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석사 학위 논문, (1989)
2. 권오훈역, 사회문제론, 서울, 보성문화사, (1988)
3. 김영중, 복지정책론, 서울, 형설출판사, (1988)
4. 보건사회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 보건의료, 사회보장부문계획 (1992-1996), (1992)
5. 서기문, "도시거주 노인들의 생활실태와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사회개발논총 제 9집,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1987)
6. 손의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연구논문집 제10집, 보

- 건사회부 국립사회복지연수원, (1988)
7. 이규옥外, “노인가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8. 이연숙, “노인문제와 행정적 지원에 관한 연구 - 청주시를 중심으로 -”, 청주대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9)
  9. 임춘식,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유평출판사, (1986)
  10. 장인협外,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11. 정미숙, “한국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12. 정천두,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전남대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1991)
  13. 최순남,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홍익제, (1984)
  14. 三浦文夫外, 講座 社會福祉 8 : 高齢化社會と社會福祉, 東京, 有斐閣, (1983)
  15. 上田千秋外, 概説 老人福祉, 京都, ミネルウア書房, (1989)
  16. Cowgill, D.O., “ *Aging and Modernization: A Revision of the Theory*”, in *after Life*, ed. by J.A.Gubrium, Springfield, (1974)
  17. Hendricks, Jon and Hendricks, C.Davis, *Aging and Mass Society*, Cambridge: Winthrop Publishers, Inc., (1981)
  18. Matilda Goldberg, E., and Naomi Connolly, “ *The Effectiveness of Social Care for the Elderly*”, Biddles Ltd., Guildford, Surrey, (1984)

#### < 자 료 >

1. 경제기획원, 1980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 (1980)
2. \_\_\_\_\_, 추계인구 : 1985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기초로 한 장기인구전망, (1986)
3. \_\_\_\_\_, 한국의 사회지표, (1988)
4. \_\_\_\_\_,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 '90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및 인구추계, (1990)
5. 보건사회부, 보건사회 통계연보, (1989)
6. \_\_\_\_\_, 노인복지 사업지침, (1989)
7.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노인복지편람, (1985)

**An Analysis of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In-Home Aged in Korea**

HAN, YOUNG-HYU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wangju Health Junior College*

> Abstract <

Until 1960, the aged problem in Korea was not so serious because they were generally cared for within the family. But, nowadays, according to the weakening of the function of family, the aged problem has emerged as social problem.

In the case of developed countries, a large part of welfare budget for the aged had been allocated to the facilities-accommodated old people. but, after recognizing the fact that these policies are not efficient, and there are many problems in accommodation policies, they have changed their welfare policies from the facilities-accommodation to the protection within the community since 1970. The relation between facilities welfare and in-home welfare is not the problem of choosing one alternative from two, but the problem of coordination and it might be desirable to pursue two objectives simultaneously.

In this paper I have tried to find out the urgent issues on the aged in Korea and tried to suggest some policies to prevent and improve the matters confronted in the Korean society these days.

The problems in taking care of the aged in Korea are : 1) shortage of capacity facilities, 2) insufficiency of government-provided subsidiaries, 3) difficulty of establishing hygienic facilities and shortage of physicians for the aged patients, 4) insufficient pay and numbers for the professionals engaged in working for the aged persons, etc. Furthermore problems also exist in the retirement system and pension system.

To deal with the above mentioned issues, the paper suggests as follows. 1) increasing the number of care facilities for the aged, especially required large scale facilities to meet the local need, 2) setting up as right pay-system, 3) increasing fund for the project in order to dealing with medicare and necessary facilities.

To solve the pension problems, the following alternatives are suggested. 1) first of all, the retirement age should be readjusted, 2) retirement funds should be accumulated within the organization systematically.

The issue of the aged is very complex, but to now the welfare policy has chiefly emphasized subsistence. Therefore, to prevent the problems of the aged from escalating, it is necessary to take positive steps to develop a multifaceted social welfare program that goes beyond mere subsistence.